



MVPR-2008-18

VIP REPORT

2008. 7. 1.

■ 미국의 대북 경제 봉쇄 해제의 경제적 효과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유 병 규
편집위원 : 홍순직, 이부형, 현석원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030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02-3669-401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미국의 대북 경제 봉쇄 해제의 경제적 효과

| | |
|--------------------------------------|----|
| Executive Summary | i |
| 1. 북핵 협상 진전 추이와 현황 | 1 |
| 2. 미국의 대북 경제 봉쇄 현황과 해제 | 2 |
| 3. 미국의 대북한 경제 봉쇄 해제의 경제적 예상 효과 | 7 |
| 4. 베트남 사례에 의한 대북 경제 효과 추정 | 10 |
| 5. 정책적 시사점 | 18 |

1. 미국의 대북 경제 봉쇄 지정과 해제

(미국의 대북 경제 봉쇄 현황) 북한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적성국으로 지정되어, 금융 거래가 제한되었다. 또한 북한은 1987년 KAL 폭파사건 이후인 1988년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후, 약 20년 동안 해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상업, 금융, 무역, 기술 교류 등 포괄적인 분야에 걸쳐 경제 봉쇄를 당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자국의 관련법과 국제 수출통제체제를 통해 복합적인 봉쇄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봉쇄의 대표적인 관련 근거가 바로 적성국 '지정과 테러지원국 지정이다.

(경제 봉쇄의 단계적 해제)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로 적성국교역법 적용이 종료되고, 20여 년간 지속되었던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른 경제 봉쇄는 단계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봉쇄 해제는 곧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 교역법에 따른 봉쇄에서 해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교역, 투자, 금융기관과의 거래 등의 제한이 폐지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제 봉쇄 해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인권, 종교에 따른 제재와 양자 차원의 다양한 제재 조항들은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들에 따른 해제는 북미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의한 봉쇄와 미국의 최혜국대우 등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봉쇄 해제의 효과) 북한의 경제 봉쇄 해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먼저, 북미 관계 개선과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촉진시키는 정치적 효과, 둘째, 경제 봉쇄로부터 해제되어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 셋째, 북한의 개혁 개방 추진의 장애물 제거 효과 등이 예견되며, 남북경협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고 베트남의 사례에 비추어 미국의 경제 봉쇄 해제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2. 미국의 대북한 경제 봉쇄 해제의 경제적 예상 효과

우선, 미국의 수출입 관련 제한 철폐로 대미 무역의 활성화와 중국 및 몇 개 국가로 한정되어 있는 무역 대상의 확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북한산 제품의 경쟁력 부재로 단기간에 교역이 활성화 될지는 미지수이며, 미국의 최혜국대우를 받지 못한 조건에서 제품의 경쟁력을 단기간에 확보하기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둘째, 금융거래와 설비투자의 제한 철폐로 투자의 활성화가 예상되며, 개방 특구 및 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외국 자본의 투자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상황과 시장경제 미발달에 대한 문제가 먼저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셋째, 정부간 및 국제기구로부터 대외 원조를 공여받거나 공적개발 원조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적개발 원조나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도 북한 경제 체제의 제도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촉진하고, 북한의 경제 재건에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베트남 사례에서 보듯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3. 베트남 사례에 의한 대북 경제 효과 추정

(베트남의 무역 정상화 사례) 베트남은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약 10여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서방 무역 관계를 정상화하였다. 베트남의 미국과의 무역 정상화 단계는 미국의 경제 봉쇄 해제 시기(1994~1995),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시기(1996~2001), 미국과 양자간 무역 협정 체결 시기(2002~2006), 미국과 항구적 정상적 교역관계 수립 시기(2007~)의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시기의 베트남 대외무역액은 연평균 119억 달러(경제 봉쇄 시기 대비 2.1배), 국제공적자금 조달은 연간 5.9억 달러(同 1.7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등록자본이 연간 5억 달러(同 3.2배) 늘어났다. 베트남의 대외무역 정상화 과정은 2006년 미국과 항구적인 정상적 교역관계(PNTR :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를 수립함과 동시에 WTO에 가입함으로써 완료되었는데, 이 시기의 대외무역액은 1,063억 달러로 미국의 경제제재 시기에 비교하면 19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대북 경제 효과 추정) 북한이 베트남의 경우와 같이 미국과의 무역 정상화를 판계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국교 정상화 이전까지 경제제재가 해제된 후, 향후 2년간에는 대외무역액이 최대 60.9억 달러(2007년 29억 달러 대비 2.1배) 증가할 수 있다. 국제공적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연간 2억 4천만 달러 유입이 가능하며, FDI는 연간 35억 달러 유입이 가능하다. 단, 국제공적자금 조달과 관련하여서는 북한의 경우 신탁기금이 1~8억 달러, 일본의 전후배상금이 40~100억 달러, EU의 지원이 최대 18억 달러로 예상되어,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조달할 수 있는 국제공적자금은 총 41~126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 같은 추정은 북한이 베트남과 같이 대대적인 개혁 개방 의지를 갖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국제기구 가입 등의 기본 여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할 것이다.

4. 정책적 시사점

첫째,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로 통미봉남(通美封南) 및 통일봉남(通日封南) 경계해야 한다. 한미일 3각 동맹협약의 복원과 함께,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신뢰 강화와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외교적 역량을 다해야 한다.

둘째, 6자회담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한은 6자회담에서의 중재자 및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 당국간 대화 복원 및 관계 개선으로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과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금융·외환 선진화와 구체화를 위한 남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경제 봉쇄 해제 단계에 따르는 남북경협 전략의 청사진 마련이 시급하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와 북핵 3단계 돌입에 따르는 비핵·개방·3000구상의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현재 북한이 비핵·개방 3000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대비한 남한 정부의 역할과 중장기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제 봉쇄 해제는 북미 관계정상화의 시작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개시를 의미한다. 따라서 남한 정부는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에 예상되는 평화체제 구축의 과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대북 경제 봉쇄 현황과 해제

| | |
|-----------------|--|
| 미국의 대북 경제 봉쇄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봉쇄 근거 : 테러지원국 지정, 적성국 지정 o 테러지원국 지정 : 1987년 KAL 폭파사건 → 1988년 1월 지정 o 적성국 지정 : 1950년 한국전쟁시부터 적성국으로 지정 |
| 단계별 해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해제 :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테러지원국 해제 - 2단계 해제 : 북미 국교 정상화, 국제 수출통제체제 봉쇄 해제, WTO 가입 |

미국의 대북한 경제 봉쇄 해제의 경제적 예상 효과

- 무역의 활성화 및 대상 확대 기대, 단 최혜국 대우 미적용으로 단기 효과 미지수
- 금융 거래와 투자 활성화 예상, 단 열악한 SOC와 시장 경제 미발달이 장애물
- 공적개발원조자금의 수용, 단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경제 체제 변화가 선결

베트남 사례에 의한 대북 경제 효과 추정

| 미국과 무역 정상화 단계 | 베트남 | 북한 [베트남에 준해 추정] |
|-----------------|--|---|
| 경제 봉쇄 해제 시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액 : 연간 119억 달러 - ODA 유입 : 연간 5.9억 달러 - FDI 유치 : 연간 51억 달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액 : 연간 60.9억 달러 - ODA 유입 : 연간 2.4억 달러 - FDI 유치 : 연간 35억 달러 |
| 국교 정상화 시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액 : 연간 242억 달러 - ODA 유입 : 연간 11.3억 달러 - FDI 유치 : 연간 39억 달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액 : 연간 124.7억 달러 - ODA 유입 : 연간 5.4억 달러 - FDI 유치 : 연간 23억 달러 |
|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액 : 연간 588억 달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액 : 연간 304.5억 달러 |
| 항구적 정상적 교역관계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액 : 연간 1,063억 달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액 : 연간 551억 달러 |

정책적 시사점

- ◆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로 통미봉남 및 통일봉남 경계
- ◆ 6자회담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노력
- ◆ 북한의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 지원
- ◆ 경제 봉쇄 해제 단계에 따른 남북경협 전략의 청사진 마련 시급
-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대비한 정부의 역할과 중장기 전략 마련 필요

미국의 대북 경제 봉쇄 해제의 경제적 효과

1. 북핵 협상 진전 추이와 현황

○ 북핵 협상 전개

-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핵 문제는 진정 국면을 맞는 듯 하였으나, 2002년 10월 2차 북핵 위기로 다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
 - 2005년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6개국이 '9.19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었으나 북미 양국간 입장 차이와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6자회담과 연계되면서 교착 상태 지속
-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와 10월 9일 핵실험 및 10월 14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호 채택 등으로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 고조
 - 2007년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2.13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양자 및 다자간 협상이 진행
 - 기술적 문제들로 인해 BDA 문제 해결에 4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7월 중순 1단계 행동 조치의 이행이 완료됨
 - 2007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6차 2단계 6자회담에서는 비핵화 2단계를 규정한 '10.3 합의'를 이끌어냄
 - 그러나 북한이 10.3 합의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기로 약속한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불이행
- 북미는 2008년 4월 8일 싱가포르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갖고 핵 프로그램 신고 타결을 위한 접점을 마련
 - 2008년 6월 26일 북한은 플루토늄 생산량 등을 적시한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고,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적성국교역법 종료 및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의 해제 절차에 착수

- 북한은 6월 27일 미 CNN 등 6자회담 5개국 언론사 초청해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파를 생중계 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북핵 협상의 진전에 따른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남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설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미국의 대북 경제 봉쇄 현황과 해제

1) 미국의 대북 경제 봉쇄 현황

○ 미국의 대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 북한은 1987년 KAL 폭파사건 이후, 1988년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후, 약 20년 동안 해제되지 않고 있음
 -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의 직접적인 사유는 KAL기 폭파사건이지만, 해제의 걸림돌은 요도호 납치범 은신처 제공과 일본인 납치자 문제임¹⁾
 - 실질적으로는 북-미간 정치적·군사적 대립 상태로 인해 테러지원국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를 둘러싼 몇 가지 논란
 - 미국 상원의 일부 의원들의 경우, 북한의 정확한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반대 결의안 제출(공화당의 샘 브라운백, 척 그래슬리 상원 등 4명)
 - 지금까지 미 의회는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 행정부의 입장을 존중하였으나, 북한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음²⁾

1) 미 국무부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1987년 KAL 폭파사건 이후, 테러지원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음. 다만, 1970년 4명의 요도호 납치범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는 점과 12명으로 알려진 일본인 납치 문제 - 이 중 5명은 본국으로 송환되었음 - 로 인해 계속 해제되지 않고 있음. 또한, 2007년 2.13 합의 이후,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과정에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음

○ 미국의 대북 경제 봉쇄의 근거

- 북한의 경우,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경제 봉쇄와 대적성국 교역법에 따른 봉쇄 등 복합적인 봉쇄를 당해옴
- 북한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경제 봉쇄를 당하기 시작함
- 이에 따라 북한은 상업, 금융, 무역, 기술 교류 등 포괄적인 분야에 걸쳐 경제 봉쇄를 당하고 있음
- 미국이 취해온 북한의 경제 봉쇄 조치의 근거와 관련법은 다음과 같음³⁾

< 미국의 대북제재의 근거와 관련법 >

| 근 거 | 관 련 법 |
|-----------------------|---|
|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제재 | 적성국교역법(해외자산통제), 방위산업법 수출관리법(수출관리규정) |
|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제재 | 브레튼우즈협정법, 수출입은행법 무역협정연장법(무역법), 대외지원법 |
| 국제테러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 | 대외지원법, 수출관리법(수출관리규정) 수출입은행법, 무기수출통제법(국제무기거래규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활동수권법 |
| 대량살상무기 수출 및 확산에 관한 제재 | 무기수출통제법(국제무기거래규정), 핵확산금지법 북한 위협감소법 |

주 : 이 밖에 북한의 인권문제도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제재법으로는 해외지원법, 국제종교자유법,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등이 있음

자료 : 김상기, 「대북경제제재의 유효성 분석: 실태와 효과」 KDI 정책연구시리즈 2007-09, p. 26에서 인용

2) 최근 몇몇 의원들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반대 결의안 제출 이외에도, 핵신고 및 검증에 대한 불만, 일본의 로비에 따른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음

3) 이러한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봉쇄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 1>을 참조할 것

○ 대북 경제 봉쇄의 현황

-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금융지원 불가능
 - 미국은 국제금융기관법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 반대⁴⁾
 - 북한은 1997년 4월, 2000년 5월 아시아개발은행(ADB : Asian Development Bank)에 가입 신청 하였으나 미국과 일본에 의해 거부당함
 - 그러나 테러지원국 해제 이전이라도 국제 금융기구가 아닌 유엔 산하 기구의 지원을 받을 수는 있음
 - 또한, 과거 세계은행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테러지원국 이란에 대해 보건 및 하수도 프로젝트, 대기오염 및 수질 개선 프로젝트에 지원한 사례에 따라 북한도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지원받을 가능성은 있음⁵⁾

- 수출입 제한 및 외부 민간 투자 제한
 - 수출관리법 등에 의해 북한산 제품의 미국시장 반입 불허 혹은 고율의 관세 부과
 - 미국 상품의 대북한 수출 선별적으로만 가능⁶⁾
 - 북한에 대한 설비 투자 제한⁷⁾

- 국제사회로부터의 기술 지원 제한
 -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반출입 제한(바세나르 협약)
 - 민감성 기술에 대한 교류 제한
 - 미국 국내법과 동시에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제한도 받고 있음

4) 결국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테러지원국 해제와 함께 북미 국교정상화가 진행되어야 함

5)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주로 생태, 환경, 의료 등의 인도적인 분야의 지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6)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일부 제재조치 해제로 대부분의 북한산 물품이나 미국산 물품의 판매가 가능해졌지만, 고율의 관세와 비교우위 상품의 불균형 등으로 실제로는 교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러한 사실은 향후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더라도 전형적인 선진-후진국간 교역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7) 미국 국내법에 의해 미국의 원천기술, 미국산 제품의 10% 이상 포함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주요 국제수출통제체제 >

| | 설립연도(한국가입연도) | 주된 통제 |
|---|-----------------------------------|---|
| 핵공급그룹 (NSG: Nuclear suppliers group) (원자력비확산체제) | · 설립: 1978년(1985년) · 회원국: 45개국 | · 원자력 관련 통제리스트 작성 · 2002년 핵통제관련품목의 북한 유입 금지 결의 |
| 호주그룹 (AG: Australian group) (생화학무기비확산체제) | · 설립: 1985년(1996년) · 회원국: 40개국 | · 화학물질, 제조설비 및 생물 무기 관련 통제 |
|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Missile Technology regime) | · 설립: 1987년(2001년) · 회원국: 34개국 | · 미사일 및 무인비행체 관련 기술 확산 방지와 대량살상 무기 발사 장치 수출 억제 |
| 바세나르 협정 (Wassenaar Arrangement) | · 설립: 1996년(1996년) · 회원국: 39개국 | · 코코ם을 대신해 1996년 설립 ·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통제 |

2) 대북 경제 봉쇄의 단계별 해제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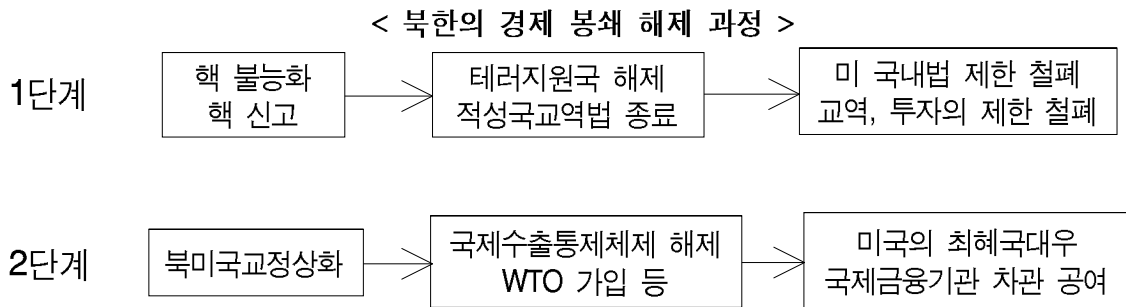
○ 북한 경제 봉쇄 해제의 단계적 진행

-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른 1단계 봉쇄 해제는 주로 미국 5개 법률에 근거한 봉쇄 해제를 의미
 - 테러지원국 지정은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의 5개 법률에 근거한 제재를 의미⁸⁾
 - 테러지원국 해제는 교역, 투자, 미국 및 국제 금융기관과의 거래 등의 제한 폐지
 - 그러나 국제수출통제체제, WTO 미가입 등의 문제가 남아있음
- 1단계 해제 후, 북미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2단계 봉쇄 해제가 이루어질 것임
 - 2단계에서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의한 봉쇄 해제와 미국의 최혜국대우 등의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⁹⁾

8) 이 가운데 적성국교역법은 2008년 6월 27일부로 폐지되었음.

9) 미국은 최혜국대우(MFN : Most-Favored-Nation treatment) 용어를 1997년 정상무역관계(NTR : Normal Trade Relations)로 바꾸었음. 베트남의 경우 미국과의 국교정상화(1995년)가 이루어진 이후, 2002년에 가서야 미 의회로부터 정상무역관계(NTR : Normal Trade Relations)를 승인받았음

-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북미 국교정상화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치·경제적 조치가 필요함
- 이 과정은 북한의 세계경제로의 통합 과정이 될 것임(WTO가입이 북한의 세계경제 통합 여부 결정)



○ 경제 봉쇄 해제에 따른 효과

-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첫째,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촉진하는 정치적 효과
 - 둘째, 경제 봉쇄로부터 해제되어 연계 되는 경제적 효과
 - 셋째, 북한의 개혁·개방 추진의 장애물 제거 효과
 - 마지막으로, 남북 경협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
- 이외에도,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남북관계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곧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개시를 의미함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정은 한반도에서의 냉전체제 종식과 동북아시아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앞당기게 될 것임
 - 이 과정은 남북관계의 핵심적인 문제인 정치·군사적인 문제의 진전을 가져올 것이며, 결과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임

3. 미국의 대북한 경제 봉쇄 해제의 경제적 예상 효과

○ 대북 경제 봉쇄 해제에 따른 북한의 경제적 효과

- 무역의 활성화 및 대상 확대

<긍정점>

- 미국의 수출입 관련 제한 철폐로 대미 무역 활성화 예상
- 중국 및 몇 개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무역 대상의 확대가 예상

<문제점>

- 북한산 상품의 경쟁력 부재로 단기간에 교역이 활성화 될지는 미지수
- 단기적으로는 최혜국대우를 받지 못한 조건에서 북한 물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움

- 지난 2006년 핵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 등으로 북한과 미국은 2006년 무역량이 99.9% 감소하여 3천 달러(북한의 신문류 수입) 기록
- 북한은 현재 아시아 대양주와의 무역이 전체 무역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2006년 통계)
- 이 중에서도 중국과의 무역이 전체 무역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경제 봉쇄의 해제는 무역의 활성화 및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북한의 10대 교역국 현황 >

(단위 : 천 US \$)

| 국기명 | 북한의 수출 | | 북한의 수입 | | 수출입 계 | | 점유율(%) | |
|--------|---------|---------|-----------|-----------|-----------|-----------|--------|-------|
| | 2005년 | 2006년 | 2005년 | 2006년 | 2005년 | 2006년 | 2005년 | 2006년 |
| 중국 | 499,157 | 467,718 | 1,081,184 | 1,231,886 | 1,580,341 | 1,699,604 | 52.6 | 56.7 |
| 태국 | 123,514 | 147,329 | 205,665 | 226,920 | 329,179 | 374,249 | 11.0 | 12.5 |
| 러시아 | 7,873 | 20,276 | 224,429 | 190,563 | 232,302 | 210,639 | 7.7 | 7.0 |
| 일본 | 131,115 | 77,776 | 62,504 | 43,816 | 193,619 | 121,592 | 6.5 | 4.1 |
| 인도 | 2,981 | 71,915 | 33,228 | 44,587 | 36,209 | 116,502 | 1.2 | 3.9 |
| 독일 | 14,698 | 17,000 | 62,069 | 59,294 | 76,767 | 76,294 | 2.6 | 2.5 |
| 싱가포르 | 6,735 | 6,564 | 73,296 | 60,048 | 80,031 | 66,612 | 2.7 | 2.2 |
| 네덜란드 | 6,782 | 10,318 | 35,451 | 21,853 | 42,233 | 32,171 | 1.4 | 1.1 |
| 스웨덴 | 337 | 794 | 34,499 | 23,619 | 34,836 | 24,413 | 1.2 | 0.8 |
| 대만 | 4,089 | 2,776 | 20,525 | 21,602 | 24,614 | 24,378 | 0.8 | 0.8 |
| 10개국합계 | 797,281 | 822,266 | 1,832,850 | 1,924,188 | 2,630,131 | 2,746,454 | 87.6 | 91.7 |
| 총합 | 998,392 | 946,795 | 2,003,286 | 2,049,008 | 3,001,678 | 2,995,803 | 100.0 | 100.0 |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6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무공자료 07-005 (2007년 6월), p. 9.

< 북한의 대륙별 무역 현황 >

(단위 : 천 US \$)

| 대륙명 | 북한의 수출 | | | 북한의 수입 | | | 수출입 계 | | | 점유율 (2006) (%) |
|------------|---------|---------|------------|-----------|-----------|------------|-----------|-----------|------------|----------------------|
| | 2005년 | 2006년 | 증감율 (%) | 2005년 | 2006년 | 증감율 (%) | 2005년 | 2006년 | 증감율 (%) | |
| 아시아 대양주 | 825,680 | 823,593 | -0.3 | 1,519,699 | 1,653,480 | 8.8 | 2,345,379 | 2,477,073 | 5.6 | 82.7 |
| 유럽 CIS | 115,354 | 102,070 | -11.5 | 433,922 | 361,628 | -16.7 | 549,276 | 463,698 | -15.6 | 15.5 |
| 미주 | 28,332 | 14,539 | -48.7 | 37,212 | 32,670 | -12.2 | 65,544 | 47,209 | -28.0 | 1.6 |
| 중동 아프리카 | 29,026 | 6,593 | -77.3 | 12,453 | 1,230 | -90.1 | 41,479 | 7,823 | -81.1 | 0.2 |
| 총계 | 998,392 | 946,795 | -5.2 | 2,003,286 | 2,049,008 | 2.3 | 3,001,678 | 2,995,803 | -0.2 | -0.2 |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6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무공자료 07-005 (2007년 6월), p. 10.

- 투자 제한의 철폐

<긍정점>

- 금융거래와 설비투자의 제한 철폐로 투자 활성화 예상

<문제점>

-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상황과 시장경제 미발달로 대규모 공적 자본 투자를 위한 추가적인 협의가 요구됨
-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북한이 곧바로 국제기구에 가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대규모 공적지원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민간 투자의 제한이 사라짐으로써, 민간 자본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법·제도의 변화가 뒤따라야 함
- 투자 제한의 철폐와 함께, 외국으로부터의 기술지원을 공여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짐¹⁰⁾
- 북한에 대한 투자제한의 철폐는 현재 북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은 물론, 유럽연합과 러시아 등의 적극적인 투자를 앞당기게 될 것임¹¹⁾

10) 유럽연합은 2000년 9월 북한에 대한 중기적 기술지원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일정한 성과를 이룩함. 자세한 내용은 이해정, “EU 신아시아 전략의 분석과 시사점,” 『현대경제주평』 08-5(통권 283호), 현대경제연구원, 2008년 2월, pp. 6~8.

11) 유럽연합의 대북한 투자 및 개별국가·기업의 대북한 투자에 대해서는 이해정, “EU 신아시아

- 특히, 외국기업의 투자 활성화는 신의주, 라선시, 북-중-러 국경지역을 한편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 큼
- 이러한 외국기업의 투자 활성화는 향후 북한 시장 선점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 공적개발원조자금의 수용

<긍정점>

- 미국의 정부간 대외원조 금지가 철폐됨으로써 선진국의 공적 개발원조 공여가 가능해짐

<문제점>

- 공적개발원조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국과 정책협의를, 통계작성, 시장경제 지향 등 제도개혁이 진행되어야 함

- 국제기구 가입 전 국제기구로부터 원조를 받을 가능성 있음¹²⁾
- 미국의 적성국교역법 종료와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 돌입에 따라 미국의 대북 경제 지원 및 경제 협력 가능성 높음¹³⁾
- 북한이 공적개발원조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정치·외교적 관계의 진전이 있어야 함
- 따라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와 경제 봉쇄 해제가 공적개발자금을 공여받을 수 있는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닌 것으로 보임
- 다만, 1단계 경제 봉쇄의 해제와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른 2단계 경제 봉쇄의 해제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은 양국간 혹은 국제기구에 의한 공적개발자금을 공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결론적으로 경제 봉쇄 해제는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촉진하고, 북한의 경제 재건에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베트남 사례에서 보듯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필수적임

아 전략의 분석과 시사점,” 『현대경제주평』 08-5(통권 283호), 현대경제연구원, 2008년 2월

12) 실제 세계은행은 팔레스타인 개발 복구 명목으로 4억 1,035만 달러(1993-2000년 말)를 지원한 바 있으며, 동티모르 신탁기금(1999-2003년, 8억 달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신탁기금(1996년, 1억 5,000만 달러), 코소보 특별신탁기금(1999년 2,5000만 달러) 을 조성한 바 있음. 김영근,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복구에 따른 국제원조 자원 현황 분석,” 『한국경제주평』 07-43(통권 274권), 현대경제연구원, 2007년 11월, p. 4

13) 이미 미국은 올해 북한에 50만 톤의 식량지원을 결정내린 바 있음

4. 베트남의 사례에 의한 대북 경제 효과 추정

○ 베트남의 무역 정상화 사례¹⁴⁾

① 베트남의 대외무역 추이

- 베트남은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약 10여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서방 무역 관계를 정상화하였음¹⁵⁾
 - 베트남은 캄보디아 침공 문제 등으로 인해 1980년대까지 서방 선진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가 단절되었음
 - 1980년대 말 캄보디아에서 철군한 이후 1990년대 초중반까지 서방 선진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 또는 회복하였음
 - 외교관계 회복 이후 1990년대 중후반에는 EU 및 일본과 2000년대에는 미국과 무역을 정상화하였음

- 베트남의 대외무역 정상화 과정은 2006년 미국과 항구적인 정상적 교역관계 (PNTR :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를 수립함과 동시에 WTO에 가입함으로써 완료되었음
 - 선진국과의 무역 정상화 이후 베트남의 대외무역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성장의 주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음
 - 베트남의 경우 대외무역 정상화와 그 이후의 경제발전으로 수출액이 수십 배 규모로까지 증대되었음

- 베트남의 대외무역 추이를 볼 때, 미국과의 무역 정상화 단계에 따라 다음의 4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제 봉쇄 해제 시기(1994~1995) : 1994년과 1995년의 연평균 대외무역

1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홍순직·김영근·이해정, “북한 경제 회생의 핵심 과제: 베트남 발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주평』 07-37(통권 제268호), 현대경제연구원, 2007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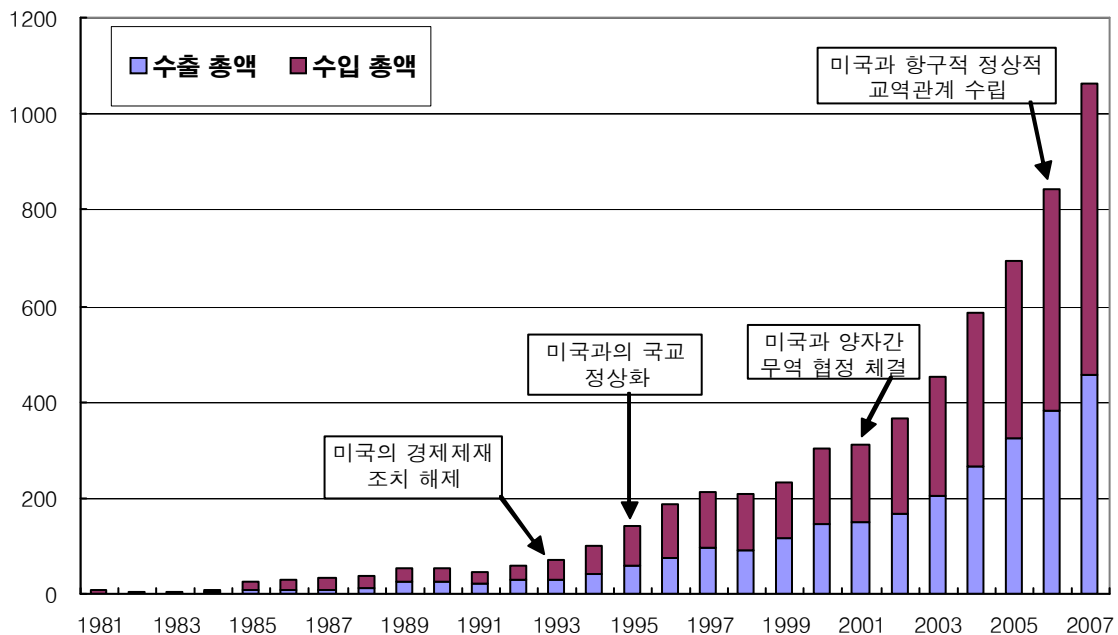
1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석진, 『베트남 사례를 통해 본 북한의 대외무역 정상화 전망』, 산업연구원, 2007. pp. 8~9 참조.

액은 119억 달러로 미국의 경제제재 시기인 1993년 이전 5년간의 대외무역 평균인 56억 달러 대비 2.1배 증가

-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시기(1996~2001) : 미국과의 국교가 정상화(1995년) 된 이후 미국과 양자간 무역 협정 체결 전까지 6년간의 대외무역액은 연평균 242억 달러로 이전 시기에 비해 2.0배 증가, 경제제재 시기 비교 4.3배 증가
- 미국과 양자간 무역 협정 체결 시기(2002~2006) : 미국과의 양자간 무역 협정 체결 이후 본격적으로 대미 무역이 시작된 5년간의 대외무역액은 연평균 588억 달러로 전 시기에 비해 2.6배 증가, 경제제재 시기 비교 10.5배 증가
- 미국과 항구적 정상적 교역관계 수립 시기(2007~) : 미국과 항구적 정상적 교역관계를 수립하고, WTO에 가입한 후 2007년 대외무역액은 1063억 달러로 이전 시기에 비해 1.8배 증가, 미국의 경제제재 시기에 비교하면 19배 증가

< 베트남의 대외무역 추이(1981~2007) >

(단위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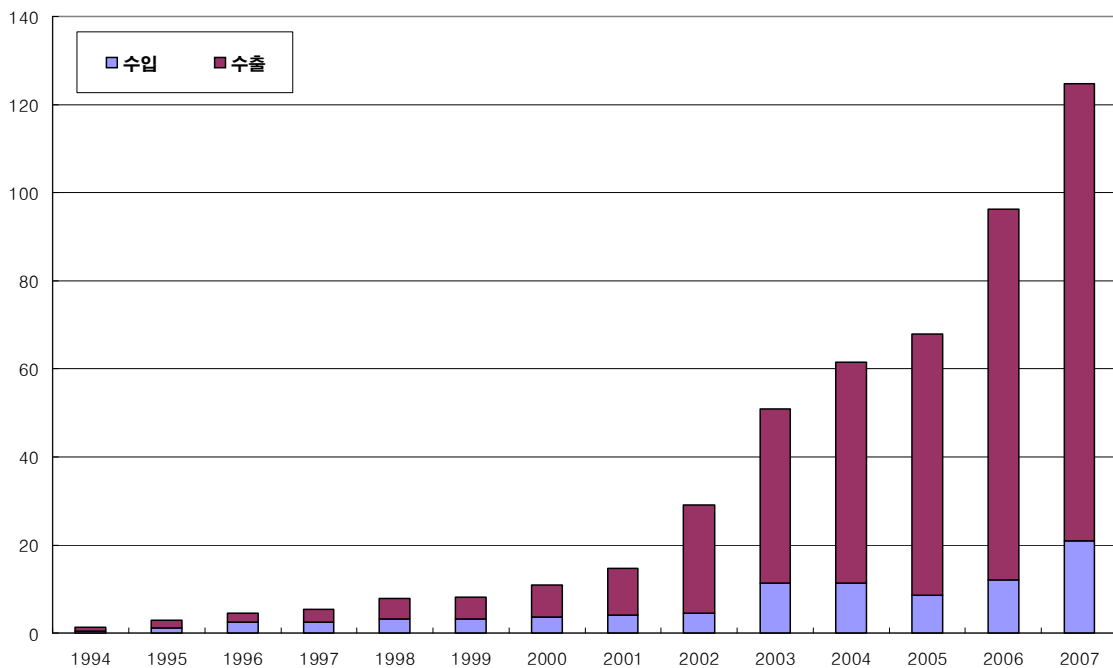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 베트남과 미국간 교역은 무역정상화에 따라 급증세를 지속하고 있음
 - 1994년 미국이 대베트남 교역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베트남-미국간 교역이 개시되었고, 2001년 미국-베트남 무역협정으로 베트남에 대해 정상교역관계의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2002년부터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급증하였음
 - 2007년 미국-베트남간 교역액은 2001년에 비해 8.3배 증가하였으며, 베트남의 대미 무역 흑자는 확대되고 있음

< 베트남의 대미 수출입 추이 >

(단위 : 억 달러)



자료 : 김석진, 『베트남 사례를 통해 본 북한의 대외무역 정상화 전망』, 산업연구원, 2007. p. 76.

② 국제공적자금 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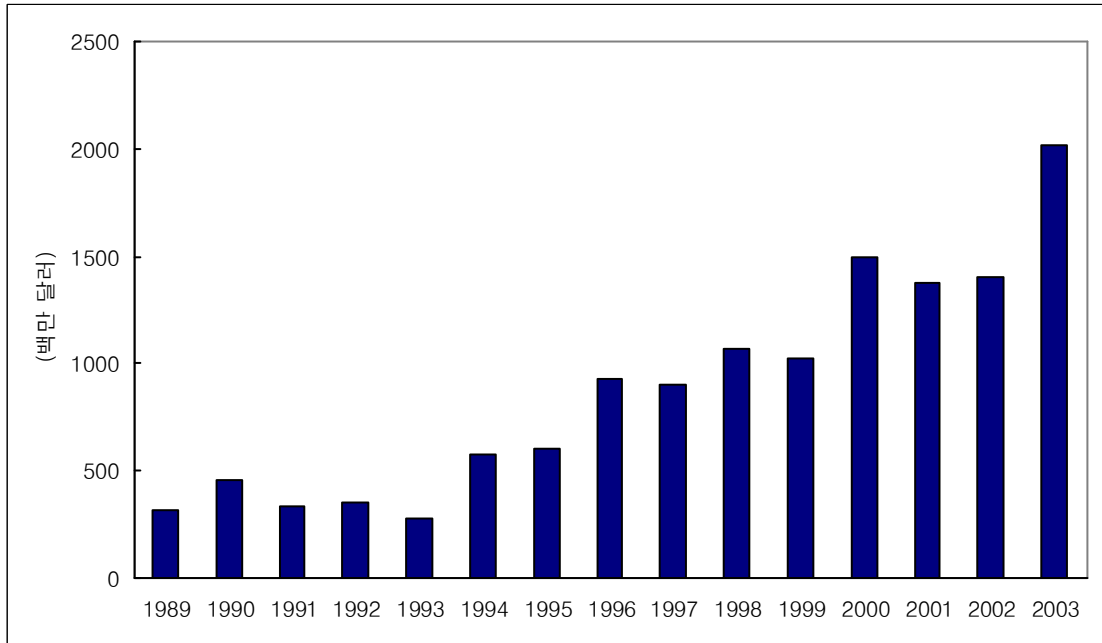
- 국제공적자금 조달 확대를 위한 친서방 정책으로 전환 : 베트남의 국제공적 자금 조달은 친동구권 시기, 과도기, 친서방 정책 시기로 구분됨

- **친동구권 시기(1954년~1988년)** : 사회주의 총노선을 채택하여 소련형 계획경제 체제를 추진한 시기로, 1978년 12월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무력으로 점령함에 따라 동구권을 제외한 국제공적자금 지원이 중단
 - 1976년과 1977년 각각 IMF와 UN에 가입하는 등 서방으로부터 외자 도입을 위한 노력이 부분적으로 진행되었으나, 1980년대 동구권 국가들의 원조가 베트남 전체 GDP의 10%에 달하고, 동구권 교역이 전체 교역의 80%를 차지

- **과도기(1989년~1992년)** : 1989년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수로 서방국가들의 양자간 공적개발원조가 재개된 시기로, 베트남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면서 구소련과 동구권의 원조가 급감
 - 이 기간동안 UNDP에서 9억 6천만 달러, IMF에서 40만 달러가 지원되고, 일본이 15억 9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서방 자금 조달이 본격화된 반면, 1992년 러시아는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중단

- **친서방 정책 시기(1993년 이후)** : 1993년 미국 경제제재조치 해제 및 지원 이후 베트남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급증하고, 1995년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등의 성과를 보이면서 증가세를 지속하여 2003년 20억 달러를 돌파하였음
 - IMF,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와는 1993년에 관계를 정상화하여 1994년부터 본격적인 원조를 받기 시작했으며, 이를 계기로 여타 서방 선진국 및 국제 원조단체로 부터의 원조도 크게 증가
 - 특히, 2003년 국제공적자금 조달이 45%가량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계은행의 빈곤감소지원채(PRSC : Poverty Reduction Support Credit) 1억 9천만 달러 지원 개시가 가장 큰 원인임
 - 1996년 이후 국제공적자금 활용 비중이 가장 높은 영역은 전력 및 용수, 교통·통신 등의 기초 인프라 구축 부분으로 전체 자금의 41~49% 가량 투자
 - 베트남은 1988~2006년까지 총 182억 달러 규모의 ODA를 조달하였음

< 베트남의 국제공적자금 조달 현황 >



자료 : UNDP, Vietnam : Development Cooperation, 각년호 및 UNDP, Overview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Vietnam 2004 참조

< 베트남의 주요 ODA 원조 조달 사례 : 1988년~2006년 >

(단위 : 백만 달러)

| | 총 ODA | Loans(양허성 차관) | Grants(증여) | 비율(%) |
|---------|-------|---------------|------------|-------|
| 일본 | 7471 | 6457 | 1013 | 40.8 |
| 세계은행 | 5111 | 5022 | 89 | 27.9 |
| 아시아개발은행 | 3507 | 3391 | 115 | 19.2 |
| 프랑스 | 749 | 676 | 73 | 4.1 |
| 독일 | 565 | 288 | 277 | 3.1 |
| 덴마크 | 473 | 8 | 465 | 2.6 |
| 스위스 | 413 | 145 | 268 | 2.3 |
| 총계 | 18289 | 15987 | 2300 | 100 |

자료 : 베트남 기획 투자부(MPI), 2006 www.dad.mpi.gov.v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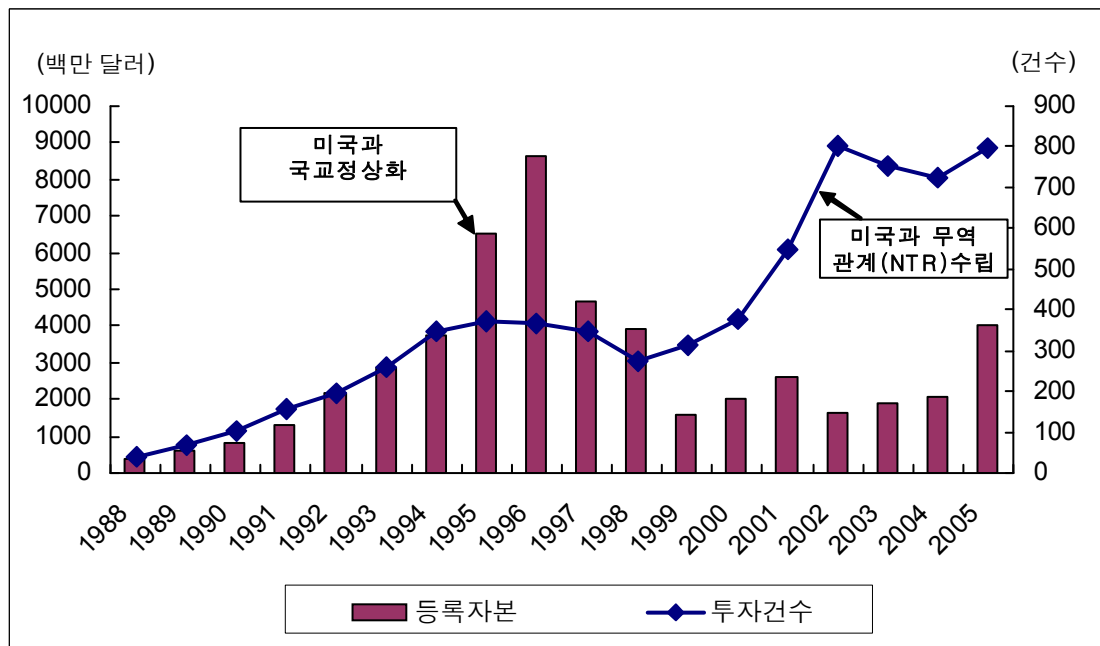
-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단계에 따른 ODA 자금 유입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미국의 경제 봉쇄 해제 시기(1994~1995) : 1994년과 1995년의 연평균 국제공적 자금 조달액은 5억 9천만 달러로 미국의 경제제재 시기인 1993년 이전 5년간의 평균인 3억 5천만 달러 대비 1.7배 증가, 금액으로는 2억 4천만 달러 증가

-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시기(1996~2001) : 미국과의 국교가 정상화 된 후 양자간 무역 협정 체결 전까지 6년간의 국제공적자금 조달액은 연평균 11억 3천만 달러로 이전 시기에 비해 1.9배 증가, 경제제재 시기 비교 3.3배 증가, 금액으로는 5억 4천만 달러 증가

③ 외자 유치

- 외국인직접투자는 1987년 12월 외국인투자법을 제정 이후 매년 3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여 수출과 함께 1990년대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
- 1989년 5.8억 달러(68건)에 불과했던 외국인직접투자는 1995년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감소세를 보이다 2002년 미국과의 정상무역관계 수립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총 등록 자본은 450억 달러에 달함
- 2006년 12월에 미국으로부터 '항구적 정상교역관계'(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 지위를 부여받고 2007년 1월에 WTO에 가입

< 베트남의 연도별 FDI 유치실적 >



자료 : Vietnam Investment Review, 각호

-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단계에 따른 베트남의 FDI 유치 실적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미국의 경제 봉쇄 해제 시기(1994~1995) : 1994년과 1995년의 연평균 FDI 등록 자본은 51억 달러로 미국의 경제제재 시기인 1993년 이전 5년간의 평균인 16억 달러 대비 3.2배 증가, 금액으로는 35억 달러 증가
 -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시기(1996~2001) : 미국과의 국교가 정상화 된 후 양자간 무역 협정 체결 전까지 6년간의 국제공적자금 조달액은 연평균 39억 달러로 경제제재 시기 비교 2.4배 증가, 금액으로는 23억 달러 증가

○ 베트남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 대북 경제 효과 추정¹⁶⁾

- 베트남의 사례에서 살필 수 있듯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 해제 및 완화는 북한-미국간 교역이 개시되는 데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양국간 교역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양국간 수교가 이루어지고, 양자간 무역 협정 체결로 정상교역관계가 부여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양국간 관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으로 국교 수립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후 별개의 협상들이 진행되어야 함
- 북한이 베트남의 경우와 같이 미국과의 무역 정상화를 4단계에 따라 진행한다고 가정할 때, 대외무역액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제 봉쇄 해제 시기 : 베트남의 경우와 같은 순조로운 진행을 가정할 때, 이 시기에 북한 대외무역액은 2.1배 증가하여 2007년 북한의 대외무역액 29억 달러를 기준으로, 대외무역액이 60.9억 달러로 증가할 수 있음
 -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시기 : 미국과 북한의 국교가 정상화 후 미국과 양자간 무역 협정 체결 전까지의 시기를 경제제재 시기 비교할 때 4.3배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대외무역액은 124.7억 달러로 증가할 수 있음
 - 미국과 양자간 무역 협정 체결 시기 : 미국과의 양자간 무역 협정 체결 이후 본격적으로 대미 무역이 시작되면 경제제재 시기와 비교하여 10.5배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대외무역액은 304.5억 달러로 증가할 수 있음

16) 다만 본 절의 추정은 북한이 베트남과 같이 대대적인 개혁·개방 의지를 갖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국제기구 가입 등의 조건을 기본 여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할 것임.

- 미국과 항구적 정상적 교역관계 수립 시기 : 미국과 항구적 정상적 교역관계를 수립하고, WTO에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경제제재 시기에 비교하면 19배 증가한다고 보면 대외무역액은 551억 달러로 증가할 수 있음
- 북한이 베트남의 경우와 같이 미국과의 무역 정상화를 4단계에 따라 진행한다고 가정할 때, 국제공적자금 조달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¹⁷⁾
 - 미국의 경제 봉쇄 해제 시기 : 베트남의 경우와 같은 순조로운 진행을 가정할 때, 연간 2억 4천만 달러 유입 가능
 -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시기 : 베트남의 경우와 같은 순조로운 진행을 가정할 때, 연간 5억 4천만 달러 유입 가능
- 북한이 베트남의 경우와 같이 미국과의 무역 정상화를 4단계에 따라 진행한다고 가정할 때, FDI 유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제 봉쇄 해제 시기 : 베트남의 경우와 같은 순조로운 진행을 가정할 때, 연간 35억 달러 유입 가능
 -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시기 : 베트남의 경우와 같은 순조로운 진행을 가정할 때, 연간 23억 달러 유입 가능

17) 북한의 경우 일본의 전후 배상금으로 인해,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북한이 조달 가능한 국제 자금은 41~126억 달러로 추정됨. 신탁기금 : 1~8억 달러, 일본 전후배상금: 40~100억 달러 (단, 납치자문제 해결 전제), EU 지원 : 최대 18억 달러, 미국의 지원 자금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

5. 정책적 시사점

○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로 통미봉남(通美封南) 및 통일봉남(通日封南) 경계

- 한미일 3각 동맹협의체의 복원과 함께,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신뢰 강화와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외교적 역량을 다해야 할 것임
- 따라서 6자회담 회원국들과 양자 및 다자간 등의 다양한 대화 채널을 통해 주변국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
 - 나아가 6자회담의 틀을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체로 발전시키도록 노력

○ 6자회담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노력

- 남한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므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노력을 경주
 - 북한은 효과적인 통미봉남을 위해 미국과는 반테러 입장 표명과 북핵 신고서 제출로, 일본과는 납치 피해자 재조사 합의 등으로 관계 개선에 주력 중임
- 6자회담에서의 중재자 및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을 제시
 - 특히, 남한은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남방 3각동맹과 북·미·러의 북방 3각 동맹의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
 - 또한, 북미간 북핵 합의의 연속성이 부시 행정부 이후의 차기 정부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수행
- 남북 당국간 대화 복원 및 관계 개선으로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확보하여야 함

-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대북 인도적 분야의 무조건적인 지원과 지난 정부 시절의 합의 사항의 이행 및 수정 보완을 위한 당국간 회담을 제의

○ 북한의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 지원


- 우선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과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여건 조성 역점을 둠
- 북한 산업 발전전략의 수립 및 금융 글로벌화 지원
 - 북한 경제의 산업 발전 및 수출 육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 안전 보장 장치 마련과 외자유치법 개정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금융·외환 선진화와 구체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
- 또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 착수로 일본과 EU 기업들의 선제적 진출에 대비하여 정부의 구체적인 남북 경협 인프라 지원 계획 수립 필요

○ 경제 봉쇄 해제 단계에 따르는 남북경협 전략의 청사진 마련 시급

-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와 북핵 3단계 돌입에 따르는 '비핵·개방·3000 구상'의 단계적 접근이 요구됨
 - 현재 북한이 '비핵·개방 3000'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함
- 개성공단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가 요구됨
 -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르는 반출입 품목 및 기술 이전의 확대를 통한 생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반출입 통제 품목의 축소에 맞추어 입주기업들의 다각화와 현지에서의 원부자

- 재 구입과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적 공단 조성 계획이 필요함
- 테러지원국 해제는 외국계 자본의 개성공단 진출의 유인을 높일 것이며, 이에 대비하여 외국 자본 유치 및 금융 거래 활성화 조치를 마련해야 함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대비한 남한 정부의 역할과 중장기 전략 마련 필요

- 미국의 대북 경제 봉쇄 해제는 북미 관계정상화의 시작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개시를 의미함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혹은 4자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정부는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에 예상되는 평화체제 구축의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함 

| | | |
|-----|---|--|
| □ 작 | 성 | :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3669-4182, sjhong@hri.co.kr) |
| | | 정영철 연구위원 |
| | | 이해정 연구원 (3669-4487, hjlee@hri.co.kr) |
| □ 총 | 괄 |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 참고 1 >

<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적용 법규와 주요 내용 >

| 적용법규 | 주요내용 |
|---|--|
| 수출통제법 (Export Control Act of 194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소간의 긴장이 고조되자 대공산권 교역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 · 1950년 6월 28일 대북한 금수조치를 실시 · 1969년에 수출관리법으로 대체되었고, 1979년에 개정 |
| 적성국교역법 (Trading with the Enemy Act of 19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대통령에게 적성국과의 무역금지와 경제제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해외자산 통제규정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 · 1950년 12월 이 법에 의거 해외자산통제규정을 발효 · 1977년 대외경제비상조치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이 제정되어 국가비상사태 시의 경제제재를 규제하고 적성국교역법은 전시에 국한 · 2008년 6월 27일 종료됨 |
| 해외자산통제규정 (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을 계기로 제정된 법으로 미국 내 북한(중국) 자산 동결 및 북한(중국)과의 무역과 금융거래를 사실상 전면금지 · 적성국 교역법과 대외경제비상조치법에 근거한 이법은 대통령의 기한연장을 통해 현재까지 효력을 유지 |
| 방위생산법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국의 대미투자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할 경우 그 투자를 차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 · 1950년부터 2000년까지 북한의 대미투자를 봉쇄. 그러나 2000년에 북한 관련 조항이 수정되어 제한적이긴 하지만 대미투자가 가능하게 됨 |
| 브레튼 우즈 협정법 (Bretton Woods Agreements of 194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의회는 이 협정을 승인하면서 공산국가에 대한 제재조항 포함 · 이 조항은 공산국가에 대한 원조에 강력한 반대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산국가에 대한 IMF와 세계은행의 지원을 차단 |
| 수출입은행법 (Export-Import Act of 194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은행을 통한 공산국가와의 거래를 금지 · 북한은 이 법에서 거래제한 국가로 명시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모든 통제와 봉쇄를 적용받음 |
| 무역협정연장법 (Trade Agreements Extension Act of 195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은 1962년 무역확대법으로 흡수되었고, 1974년에는 무역법으로 통합. 이후 1988년에는 '종합무역법'의 '통합품목관세'로 변경 · 이 법은 처음으로 공산국가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부여를 금지하였고 1974년의 무역법에서는 북한에 대해 일반특혜관세(GSP) 공여를 금지 |

| | |
|--|---|
| <p>대외지원법 (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국가, 테러지원국가, 인권침해국가 등에 대한 지원, 원조 금지 · 이 법은 모든 공산국가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금지. 미 대통령은 원조금지 대상국 목록을 작성하는데 북한은 현재 이 목록에 포함 · 인권침해국가, 테러와 관련된 국가도 이 법을 적용 · 1979년 수출관리법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국가 역시 적용대상 |
| <p>수출관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은 북한에 대한 제제와 수출통제를 정의 · 미 대통령은 이 법에 대한 통제국가 목록을 작성 · 1961년의 대외지원법의 공산국가 목록에 있는 나라들은 자동적으로 포함 · 국제테러를 지원하는 국가에도 제제 |
| <p>수출관리규정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of 1996)</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통제규정은 국가안보, 대외정책, 핵확산금지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며 특정한 수출, 재수출 및 특정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제정 · 이 규정의 742조는 교역통제물품목록(CCL)에 근거한 수출통제를 규정. 따라서 대량살상무기의 통제와 북한과 같은 국제테러국가에 대한 수출통제의 근거를 제시 · 또한 이 규정은 국제테러지원 국가에 대해 규정된 품목의 수출, 재수출을 금지. 따라서 CCL에 올라있는 모든 품목은 북한에 대한 수출과 재수출을 위하여 수출허가가 필요 |
| <p>무기수출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 of 1976)</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9년 수출관리법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있는 국가는 이 법의 통제대상이 되는 무기를 판매, 구입할 수 없음 · 미사일과 그 기술을 수출하거나 제공하는 국가, 모든 핵무기, 핵 기술과 장비를 수출하는 국가들에 경제제재를 가한다고 규정 · 제제내용은 해외원조법에 따른 원조 중단(인도적 원조는 제외), 미국의 군수품 수입 일체 금지, 미 정부의 금융지원 금지(인도적 금융지원 제외), 국제금융기관 지원 반대, 미국 내 모든 은행의 해당 국가 차관 제공 금지 등 · 국무부는 이에 근거해 국제무기거래 규정을 관리 |
| <p>국제금융기관법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Act of 1988)</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명백한 위반행위와 관계되는 국가나 국제테러를 범하는 개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해 국제금융기관의 미국집행이사들은 어떠한 대출이나 금융 지원 및 기술지원의 연장에 대해 반대 |
| <p>군수통제품목 (Munitions Control List)</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대 이란, 대 시리아 미사일 기술 확산에 대한 제재로서 군사 통제품목에 있는 물품의 수출금지 및 2년간 미국정부와의 계약 금지 · 미사일, 전자, 우주항공, 군용기의 생산제조와 관련된 북한의 제반 활동에 대해 금지를 적용 |

| | |
|--|--|
| <p>핵확산방지법 (Nuclear Proliferation Prevention Act of 1994)</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8년 핵확산금지법을 수정한 것 · 미 정부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구매하려는 나라를 제재할 것'을 의무화 ·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국가와는 조달 계약을 할 수 없고 어떤 금융거래도 할 수 없음 ·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IAEA를 탈퇴함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음 |
| <p>북한위협감소법 (North Korea Threat Reduction Act of 1999)</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은 미국이 핵 원료를 제공하는 계약이나 협정을 맺을 수 없고 북한에 어떤 핵관련 물자나 시설, 서비스, 기술도 이전할 수 없도록 규정 · 만약 미국이 핵관련 물자의 이전 또는 수출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미 대통령은 북한이 정해진 일정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결정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 |
| <p>대외활동수권법 (Foreign Operations, Export Financing, and related Programs Appropriations Act of 1991)</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테러 행위자를 지원한 국가에 대해 상호원조 기금의 사용 금지 |
| <p>국제종교자유법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of 1998)</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2001년부터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 · 북한을 경제제재의 대상으로 지정 |
| <p>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2000)</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부터 북한을 가장 심각한 위반그룹으로 분류 · 해외지원(인도적 지원 제외), 문화교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지원 금지 |

자료 : 김상기, 「대북경제제재의 유효성 분석: 실태와 효과」 KDI 정책연구시리즈 2007-09, pp. 86~89.

< 참고 2 >

< 북핵 관련 주요 일지 >

| 일 시 | 주 요 내 용 |
|----------------|--|
| 1991. 12. 31 | -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 |
| 1992. 5. 23 | - 국제원자력기구(IAEA), 북한에 대한 임시사찰 실시(5. 23~6. 5) |
| 1993. 3. 12 | - 북한,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선언 |
| 1993. 5. 11 | - UN, NPT 탈퇴 철회와 NPT 의무 이행 촉구 결의(제825호) 채택 |
| 1993. 6. 11 | - 북미, 1단계 고위급회담 타결 '북미공동성명' 발표 |
| 1994. 10. 21 | - 북미, 제네바 3차 고위급 회담서 기본합의문 서명 |
| 1994. 11. 1 | - 북한, 핵 활동 동결선언 |
| 1995. 12. 15 | - 북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수로 공급 협정 체결 |
| 1997. 7. 28 | - KEDO, 금호사무소 개설 및 부지 공사 착수 |
| 2000. 2. 2 | - 북한, 경수로 지연 제네바 합의 파기 경고 |
| 2002. 9. 16 | -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북 핵무기 보유" 주장 |
| 2002. 10. 3~5 | - 제임스 켈리 미대통령 특사 방북 ·북한의 우리농농축 프로그램 시인 주장 |
| 2002. 11. 14 | - KEDO, 대북 중유 지원 중단 발표 |
| 2002. 12. 12 | - 북한, 핵동결 해제 발표(영변원자로 봉인 제거, IAEA사찰단 철수) |
| 2003. 1. 10 | - 북한, 정부 성명 통해 NPT 탈퇴 선언 |
| 2003. 2. 12 | - IAEA 특별이사회, 북핵 문제 안보리 보고 결의안 채택 |
| 2003. 8.27~29 | - 제1차 북핵 6자회담 베이징에서 개최 |
| 2005. 2. 10 | - 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 |
| 2005. 5. 11 | - 북한, 영변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천개 인출 완료 발표 |
| 2005. 9.13~19 | - 2단계 제4차 6자회담 베이징서 개최, '9.19 공동성명' 채택 |
| 2006. 6. 1 | - 북한 외무성의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 초청, 미측 거부 |
| 2006. 7. 5 | - 북한, 대포동 2호 등 미사일 발사 |
| 2006. 7. 16 | - UN안보리, 북한 미사일결의(제1695호) 만장일치로 통과 |
| 2006. 10. 3 | - 북한, 핵실험 계획 발표 |
| 2006. 10. 9 | - 북한, 핵실험 실시 |
| 2006. 10. 14 | - UN안보리, 대북 제재안 가결 |
| 2006. 10.18~21 | - 라이스, 미 국무장관 일·한·중·러 순방 |

| | |
|----------------|--|
| 2006. 10. 19 | - 김 위원장, "조건부 2차 핵실험 유보 및 6자회담 복귀" 발언 - UN, 대북 제재위원회 출범 |
| 2006. 10. 31 | - 북 미 중, 6자회담 조기 재개 합의 |
| 2006. 11. 1 | - 북한 외무성, "금융제재 논의 해결 전제 아래 6자회담 복귀" |
| 2006. 11. 18 | - 부시대통령, "종전 선언과 서명" 의사 표시(하노이, 한미정상회담) |
| 2006. 11.28~29 | - 미국, 베이징 수석대표 회동에서 북한에게 '초기 이행 중치' 제안 |
| 2006. 12.18~22 | - 2단계 제5차6자회담, 북한의 先BDA 해결 주장으로 성과없이 폐막 - 방코델타아시아(BDA) 포함한 북미 금융 1차실무회의(12.18~19) |
| 2007. 1. 16~18 | - 북미 베를린 회동 · 미국의 선별적 금융제재 해제에 북한도 초기이행조치 준비 시사 |
| 2007. 2. 8~13 | - 3단계 제5차 6자회담, '2.13 공동 합의' 채택 ·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와 대북 지원 분담에 합의 |
| 2007. 7. 15 | - 2.13 합의 첫 단계 이행 조치로 북에 중유 지원 - 북은 영변 플루토늄 원자로 폐쇄 발표 |
| 2007. 9. 1~2 | -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제2차 회의 · UEP를 포함해 연내 북핵 전면 불능화 합의 |
| 2007. 10. 3 | - 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서 비핵화 2단계 조치 합의 (10.3 합의) · 북한은 연말까지 핵 불능화·핵프로그램 신고 완료 · 미국은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무역법 적용 제외키로 합의 |
| 2007. 11.1~5 | 미 북핵 불능화팀 방북, 불능화 조치 착수 |
| 2007. 12. 3~5 | - 힐 차관보 방북 · 부시 미 대통령, 북한에 "성실 신고 촉구" 친서 전달 |
| 2007. 12. 31 | 북핵 불능화 및 신고와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합의(10.3 합의) 미이행 |
| 2008. 1 |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성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방북 |
| 2008. 2. 19 | 김계관 외무성 부상-힐 차관보의 북미양자회담 베이징에서 개최 |
| 2008. 3. 13~14 | 북미양자회담 제네바에서 개최 |
| 2008. 4. 8 | - 김계관-힐 양자회담 싱가포르에서 개최 · 북핵신고 논의문제 잠정 합의 |
| 2008. 6. 5 | - 성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핵 신고 문제 논의 위해 방북 · 북, 영변 원자로의 가동일지를 미측에 전달 |
| 2008. 6. 10 |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 : 반테러 입장 천명 |
| 2008. 6. 26 | - 북,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 제출 - 미, 대북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 착수 |
| 2008. 6. 27 | - 북,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